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456
------------	------

2018년 4월 5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26일, 신원철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29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8년 4월 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신원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 등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금의 범위 안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이와 관련하여 마을버스 적정 요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한 바, 시장이 관련 조합 및 사업자 등에게

운송비용 등의 산출기초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시장은 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(안 제9조제3항)
- 시장은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동법 시행규칙
-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생략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) : 수정동의

- 마을버스 요금 기준 범위를 정할 때 자료 제출요구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하도록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
- 「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교통수단의 고급화, 시설의 확충·개선 사업 등에 국한하고 있으므로, 성과금은 근거가 부족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적정 요금 범위 산정을 위해 시장이 관련 조합 및 사업자 등에게 운송비용 등의 산출기초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마을버스 요금기준 등의 범위를 정할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비용 등의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

현행 조례에서는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 제8조제1항¹⁾ 및 제2항 등에 따라 “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

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장의 마을버스 요금기준 산정시 보다 정확한 운송비용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-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1) 제8조(운임·요금의 신고 등)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현행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8조에서는 대중교통 육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와 공표,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및 우선적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고,

현재 서울시에서 “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”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“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후에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

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를 통해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 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요금기준 및 요금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8조에 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)</p> <p>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,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	<p>제9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요금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8조에 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